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이민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7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이민옥 의원(1명)

찬 성 자: 김기덕,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민병주,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철성,
봉양순, 송도호, 신복자,
오금란, 왕정순, 유만희,
유정희, 이병도, 이상훈,
이소라,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의원(29
명)

1. 제안이유

-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되었으나, 서울시의 관련 조례는 제한적인 실정임
-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에 따른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임
- 이에 작은도서관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서울시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편차 없이 균등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안 제3조)
-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자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 독서문화 향상, 공동체 문화 강화 등으로 확대 규정(안 제4조)
- 다.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 마.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또는 지원 규정(안 제8조)
- 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9조)
- 사.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 및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학교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 및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운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2.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 등 운영비 및 인력 지원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교육비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후원의 장려)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활동 전개 등을 통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종사자 교육) 시장은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도서관
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
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을 “「독서문화진흥법」”으로 한다.

제4장(제28조 및 제29조)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지원, 종사자 교육 관련 내용 등 일부 비용 수반의 여지가 있는 규정이 있어 입법취지 문의 및 서울시 관련부서(문화본부 서울도서관) 각종 문서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지원사업(안 제6조)의 경우 **기추진¹⁾**하고 있고, 새로이 규정된 사안 또한 기존 자원 및 시스템을 활용²⁾(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할 경우 서울시 재정 지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작은도서관 관련 주요예산(안 제6조 관련)

- ① 서울시 문화본부 2025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 787,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형식으로 391개관에 2,000천원씩 지원(자료구입비, 운영비 등)
- ② 서울시 문화본부 2025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전환사업)> : 588,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금 형식으로 공사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자료구입비 지원

2) [기존 자원 적극활용 가정] 향후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예산 한정성 및 재정투입 효율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기존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가정할 시 해당 규정에 따른 재정지출 가능성은 낮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① (안 제7조) 캠페인 형식(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추진 시 비용소요 미미
- ② (안 제8조) 서울도서관에서 기추진 중인 <도서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활용할 경우 종사자 교육관련 추가재정소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③ (안 제9조) 도서관 간 도서 및 자료 등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경우 해당규정에 “시스템 구축”이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국가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 차원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 국가단위의 국립중앙도서관 책이음 서비스(붙임 참고)를 우선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서울소재 작은도서관 269개소는 책이음 서비스에 기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시스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다만, 도서관 별로 사정이 달라 해당 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곳이 있을 수도 있음)
- ④ (안 제10조) 통상 시민대상 표창의 경우 부상(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참고)없이 표창장만 수여하기에 표창장 제작비(1인당 5,500원)정도의 소액만 소요(예외적으로 공무원 표창 시 일부 부상수여)되므로 서울시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1 책이음서비스란?

- 하나의 통합 이용증으로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한 전국 공공도서관을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책이음 통합센터로부터 회원정보 반입만으로 도서의 대출, 반납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0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확대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 책이음서비스는 코라스(KOLAS III)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관리시스템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 * 단, KOLASIII이외의 자료관리시스템이 책이음 참여를 원할 경우 책이음 참여도서관 MW 구축 및 개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관리시스템을 책이음 참여도서관 MW와의 연계(MW 통신 및 연계 기능 개발, MW SQL 설정파일의 SQL 변경 등)를 진행하여야 함.



<책이음 브랜드 이미지 및 샘플 이용증>

< 참고 > 책이음서비스 구성도

